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 2024년도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업무지침 개정 -

<요약본>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상세분>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추가 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 예외 규정 등을 반영하여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추가 채용 지원

- 돌봄수요 지원을 위해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센터별 1명씩 총 3,001명 종사자 추가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돌봄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23.1~),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이 시행(’ 22.11~)되며 늘어난 돌봄부담을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이번 개정에서는 정원 25인 이상 시설에 법정 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를 추가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 채용절차를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 다문화아동 출석 특례

- 아동출석관리에 있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경우 친인척 경조 혹은 보호자 모국 방문으로 인한 장기출국 시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 연간 30일 이내, 항공권 혹은 출입국 기록 확인되는 공적 자료 제출 시 한정

□ 제5기 평가사업 반영

- 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리에 있어 기존의 제4기 평가('21~'23년) 종료에 따라 새로 개정된 제5기 평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 그동안 진입 및 심화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된 평가체계를 정기평가(신규기준 시설)로 일원화하고 평가등급을 간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즉각적 평가를 위하여 수시 평가를 도입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감점 및 강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함께돌봄>

□ 이용료 한도 예외

- 현장학습 등 외부 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뤄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 202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붙임2>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담당 부서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	책임자	팀 장	이성민 (044-202-3378)
		담당자	사무관	구도은 (044-202-3361)



2024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자료로, 이외 세부 개정사항은 지침 참고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p.17	가. 시설입지 조건 1) (생략)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으로 설치되도록 권장	가. 시설입지 조건 1) (좌동)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u>및 아동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에</u> 설치되도록 권장	지자체 요청으로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곳 설치 권장 문구 추가
p.39	바)~아) (생략) 자) 자녀가 <u>3명</u> 이상인 가구의 아동	바)~아) (좌동) 자) 자녀가 <u>2명</u> 이상인 가구의 아동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p.46	다. 운영시간 1) (생략) 2) (생략) (표) (생략) -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u><신설></u>	다. 운영시간 1) (좌동) 2) (좌동) (표) (좌동) -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 가능 ※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 7-1호]를 센터별로 보관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본 제출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 필요 ※ <u>기본 운영시간의 종료시간이(특성별 야간운영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등의 종료시간이 아님에 유의)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20시 또는 20시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아동별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 정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u>	매 학기 전후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0시 이후까지 운영이 확정된 시설에서는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별도 수요 파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 필수 운영시간을 20시에서 19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가능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p.48	마. 출결관리 1) ~ 2) (생략) 3) 출석인정 특례 가)~라) (생략) <u><신설></u>	마. 출결관리 1) ~ 2) (좌동) 3) 출석인정 특례 가)~라) (좌동) - 다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친인척 경조,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인한 장기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인정(항공권,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공적 자 료 제출 시)	다문화 아동 대상 해외 출국 시 출석 특례 인정 필요
p.106~ 108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및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 (생략) 2) (생략) - 또한 현재 24개월 자부담 기간인 시설 등 현재 국고보 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향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도 사업안내를 준수하여야 함(사업안내 미준수시 <u>진입평가</u> 제외) 나. 지원대상 1) 기존지원시설 :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u>심화 평가</u>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규지원시설 : <u>진입평가</u> 결과에 따라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지원 (예) <u>진입평가</u> 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21년 3월 15일 → 2023년 3월부터 지원 가능	제4장.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1.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절차 가. 지원 근거 및 조건 1) (좌동) 2) (좌동) - 또한 현재 24개월 자부담 기간인 시설 등 현재 국고보 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향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도 사업안내를 준수하여야 함(사업안내 미준수시 <u>정기평가(신규시설)</u> 제외) 나. 지원대상 1) 기존지원시설 : 기존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u>정기평가 (기존시설)</u>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 2) 신규지원시설 : <u>정기평가(신규시설)</u> 결과에 따라 설 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지원 (예) <u>정기평가(신규시설)</u> 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이 2021년 3월 15일 → 2023년 3월부터 지원 가능	- 기존 진입평가/ 심화평가 로 나뉘진 평가유형을 정기평가(신규시설, 기존시설)로 단일화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수시평가 신설 - 평가 결과가 아동학대사례 발생시설과 전체 시설간 변별력 없다는 '22년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2) <u>심화평가</u> :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로 해당년도 평가 진행시 운영 중인 시설	2) <u>정기평가(기존시설)</u> :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중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기존시설로 해당년도 평가 진행시 운영 중인 시설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p.167~ 168	<신설>	※ 2021년 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시설의 경우 2024년 정기평가(기존시설) 의무대상 3) 수시평가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시설 가) 차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정기평가(신규시설) '통과' 시설 포함) 시설의 아동학대사건(사례)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의뢰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 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 확정 동일연도에 아동학대사건(사례) 인지(기반영된 중복사건 제외)에 의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의 경우 수시평가 없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강등 조치 나) 아동학대 사례 발생이력으로 직전 평가(정기·수시)에서 감점·강등된 시설 중 차기 정기평가(기존시설) 주기 도래 이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판단으로 일반사례전환 시' 해당 시설에서 의뢰하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 ※ 수시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 확정 동일연도에 일반사례전환에 의한 수시평가 대상으로 결정한 시설의 경우 수시평가 없이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치	
p.170	[표 내용]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전문가, 지역아동센터시도지원단장, 지역아동센터 담당업무 지자체 공무원, 지역아동센터관련단체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 : 중앙평가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두고 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평가결과 확정을 기본업무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매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표 내용]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운영 : 중앙평가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두고 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과 평가결과 확정을 기본업무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평가등급 ABCD/미통과 → 통과/미통과 변경 – 등급에 민감한 현장의 평가 결과 수용도 향상, 과도한 줄세우기로 평가 부담 증가로 돌봄의 질 떨어질 우려 해소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 진입 및 심화평가,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평가의 평가결과 확정 - 컨설팅 대상시설(미흡(D등급) 및 미통과(non-pass))시설 선정 - 심화평가 미통과(non-pass)시설 운영개선계획서 심사 - 심화평가 미통과(non-pass)시설 재평가 심사 및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 매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수시평가 대상시설 심의 및 확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평가결과 확정(아동학대 사례 발생 이력 평가결과 감점·강등 확정) - 통과(컨설팅 의무) 및 미통과 시설 선정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운영개선계획서 심의 - 정기평가·수시평가 미통과 시설 재평가 심의 및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p.175	나. 평가결과 활용 1)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 및 컨설팅지원, 재평가 실시, 정책수립 반영 등 활용 2) 평가결과 A~C등급(보통이상) 시설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나. 평가결과 활용 1) 정기평가(신규시설) ① 통과(통과) :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보조금 지원(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은 기존시설로 전환) ② 통과(컨설팅 의무)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로부터 보조금 지원하되 이후 24개월간 보조금 10% 감액(지자체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필요) ③ 미통과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평가 대상 기준이 초기화되며, 이후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평가 재신청 2) 정기평가(기존시설)·수시평가 ① 통과(통과)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정기평가(기존시설) 결과 시·도별 최상위 10% 이내 대상으로 차기 정기평가(기존시설)의 일부 영역 평가 대상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② 통과(컨설팅 의무)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추가 - 참여동기 강화 및 평가 실효성 확보로 돌봄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도모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3) 평가결과 D등급 및 NON PASS 시설 ① (심화평가결과 D등급 및 진입평가결과 D등급 시설)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에 의무 참여해야 함(지자체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필요). 컨설팅 미 참여시 익월부터 2년간 운영비 및 인건비 10% 감액 ② (심화평가결과 NON PASS 시설)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년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해야 함(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	팅에 의무 참여해야 하며, 컨설팅 미참여 시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보조금 10% 감액(지자체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필요) ※ 운영컨설팅 비용 시설 자부담 ③ 미통과 : 시설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1년 간의 맞춤형 컨설팅 의무 참여 후 재평가 참여(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지원단으로 컨설팅 의뢰) ※ 집중컨설팅 비용 시설 부담 미발생, 운영컨설팅 비용 시설 자부담 - 컨설팅 미참여 시설은 재평가 참여 불가하며, 거부 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보조금 중지 → 24개월 이상 자부담 시설로 운영 필요 - 2회 연속 평가결과가 '미통과'인 경우 컨설팅 및 재평가 없이 자부담 시설로 즉시 전환 ※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기간 종료 전까지 정기평가(신규시설)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재개 여부 결정(단,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시설은 다음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 ※ 정기평가(신규시설) 대상 조건 중 '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평가 참여 가능(정기평가 주기 재설정) 3) 정기평가(기존시설)·수시평가 재평가 ① 통과(통과) :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② 통과(감액 적용) :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 달부터 24개월간 보조금 10% 감액 지원 ③ 미통과 :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4개월간 보조금 중지 → 24개월 이상 자부담 시설로 운영 필요 ※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기간 종료 전까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u>선택 의뢰). 컨설팅 미 참여 시설은 재평가에 참여 불가하며, 거부의사가 확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금 중지 → 24개월 이상 자부담시설로 운영 필요</u> ※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기간 종료전까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재개 여부 결정 ③ (진입평가결과 NON PASS 시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진입평가 대상기준이 초기화되며, 이후 새롭게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진입평가 재신청 ※ 진입평가는 NON PASS 시설에 대한 재평가가 없으므로, 재신청을 통해 진입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익월부터 보조금 적용	<u>지 정기평가(신규시설)에 참여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재개 여부 결정(단,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시설은 다음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u> ※ 정기평가(신규시설) 대상 조건 중 '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평가 참여 가능(정기평가 주기 재설정)	
p.176	4) 재평가결과 D등급 및 NON PASS 시설 ① 심화평가 재평가결과 D등급 시설 : 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 운영비 및 인건비 10% 감액 지원 ② 심화평가 재평가결과 NON PASS 시설 : 재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2년간 보조금 중지 → 24개월이상 자부담시설로 운영 필요 ※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기간 종료전까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재개 여부 결정 - 단, 자부담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시설은 다음 연도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기간 유지 5)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 : 평가결과 최저기준점(70점) 이상일 경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평가결과 미통과일 경우 별도의 재평가 없이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처리 [표]	<삭제> [표] <삭제>	

구분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p.180	가. 지자체 제출사항 1)~3) (생략) 4) 시·군·구는 운영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신고 즉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시도지원단으로 시설정보 공문 통보 <u><신설></u>	가. 지자체 제출사항 1)~3) (좌동) 4) 시·군·구는 운영비 지원 특례 지역아동센터 신고 즉시, 보건복지부 및 시·도, 시도지원단으로 시설정보 공문 통보, <u>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점검 결과 보고</u> – (시·군·구) 시·도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 (시·도) 시·군·구 자료 취합 및 보건복지부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상·하반기, 연2회) ※ 공문 제출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사전적격 확인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자체점검표(시설용)’,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 현장점검표(공무원용)’ 첨부 필수 5)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 결과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상·하반기, 연2회) – 의무 컨설팅 대상기관 의뢰(시·군·구→시도지원단) 결과 및 각 시설의 컨설팅 참여 관리·감독 결과 – 평가 미통과, 컨설팅 미참여, 평가 거부 등에 따른 보조금 감액 및 중단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 적용 결과	특례시설에 대한 보장원의 특례평가 → 지자체 현장점검으로 변경 – 동일 연도 내 평가 반복 방지 및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특례시설’에 대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자료로, 이외 세부 개정사항은 지침 참고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지침 별도 발행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으로 일원화	‘23년부터 학교돌봄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포함·관리됨에 따라 지침 일원화 * 시설 설치, 이용료 징수, 보조금 지급 등 학교돌봄터 특성에 따라 별도 표기 필요한 부분만 명기
11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 설치기준  권장사항 1.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아동의 활동실에 한정) 3.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4.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5.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2. 설치기준  권장사항 1.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없는 곳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시설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2. 쾌적한 돌봄환경 및 아동안전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이 아닌 곳 및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곳 3.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위치하는 곳(그 이상의 거리인 경우라도 해당 센터가 등하원 지원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동일하게 간주) 4.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는 곳 5. 옥외활동(옥외놀이, 체험활동 등)이 원활한 곳과 인접한 곳	지자체 요청으로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곳 설치 권장 문구 추가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53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 돌봄서비스 신청 다. 이용료 결정 및 수납 2) 수납한도액 ● 월 10만원(아동 1인당) － 센터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 <신설>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 돌봄서비스 신청 다. 이용료 결정 및 수납 2) 수납한도액 ● (좌동) － (좌동) － 외부 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u>특별활동 프로그램(현장학습 포함) 운영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u> ※ (좌동)	센터별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결정하여 돌봄 이용자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이용료 한도 초과 가능 규정 신설
54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가.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u>만 6~12세(초등학생)</u> 아동(<u>만 6세</u>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가.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u>6~12세(초등학생)</u> 아동(<u>6세</u>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좌동)	아동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범위를 관할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도록 권장문구 추가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신설>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 이용범위를 관할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도록 권장 (ex. 관할시군구가 아니지만 센터인근거주아동 등)	
55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나. 이용아동 수 ●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정원(정기돌봄)은 면적 기준(아동 1인당 3.3㎡이상)을 고려하여 산정 <신설>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나. 이용아동 수 ●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정원(정기돌봄)은 면적기준(아동 1인당 3.3㎡이상)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 사무공간 등 부속공간을 제외한 돌봄 공간(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에 맞춰 산정할 것을 권장	쾌적하고 질 높은 돌봄 공간 조성을 위하여 부속공간을 제외한 돌봄 공간에 맞춰 정원을 산정하도록 권장 문구 추가
56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다. 운영시간 ● 돌봄서비스 신청서 등을 토대로 매 학기 시작(3월, 9월) 전후 센터별로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여,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 보고 후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3. 이용아동관리 다. 운영시간 ● (좌동)	매 학기 전후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0시 이후까지 운영이 확정된 시설에서는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별도 수요 파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 * 필수 운영시간을 20시에서 19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가능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14:00~19:00로 조정할 수 있음 * 돌봄서비스 신청서 외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서식6-1]활용 가능 <u><신설></u>	* (좌등) <u>※ 센터 운영 종료시간이 20시 또는 20시를 초과하는 경우,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를 통한 별도 수요 파악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u>	
66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4.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임면보고 및 배치 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u>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등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함</u>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4.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임면보고 및 배치 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u><삭제></u>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취업제한 포함사항 명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방법 등 현행화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 센터장 및 돌봄선생님의 대체인력 및 외부강사, 정부지원 기타일자리 사업대상자, 자원봉사자 등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에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결격사유 조회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임용 및 노무 제공을 배제해야 함 ● 결격사유(범죄경력)가 없는 경우, 회보기관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지 않고 결격사유 유무 열람결과를 근거로 업무 처리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종사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함 － 직영인 경우 지자체 직접 의뢰, 위탁 운영인 경우 법인 등이 의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u>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u> <u>*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일일강사 포함), 사회복무요원 등이 되며, 자원봉사자, 실습생,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등도 해당됨(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u> <u>※ (참고) 조회의무자별 대상자 구분</u> <table><tr><th><u>경력조회 의무자</u></th><th><u>조회대상자</u></th><th><u>비고</u></th></tr><tr><td><u>지자체장</u></td><td><u>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u></td><td><u>본인 동의서 필요</u> <u>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u></td></tr><tr><td><u>아동관련기관 의 장</u></td><td><u>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예정자</u></td><td><u>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u> <u>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이용</u></td></tr></table>	<u>경력조회 의무자</u>	<u>조회대상자</u>	<u>비고</u>	<u>지자체장</u>	<u>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u>	<u>본인 동의서 필요</u> <u>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u>	<u>아동관련기관 의 장</u>	<u>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예정자</u>	<u>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u> <u>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이용</u>	
<u>경력조회 의무자</u>	<u>조회대상자</u>	<u>비고</u>										
<u>지자체장</u>	<u>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u>	<u>본인 동의서 필요</u> <u>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u>										
<u>아동관련기관 의 장</u>	<u>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예정자</u>	<u>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u> <u>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이용</u>										
142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5. 집행관리 ● 인건비 －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나,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별도 인건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경우, 지원 단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제4장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지원 5. 집행관리 ● 인건비 － (좌동)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호봉경력 인정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권장 문구 추가									

page (‘23년 기준)	2023년	2024년	개정이유
	<신설>	※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호봉 산정 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른 근무경력(유치원, 초·중등교사 경력 등)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상의 별도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장 *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자체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가능	